

# 유안타증권(주) 신용정보활용체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1 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### · 이용목적

- 가.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나. 채권추심
- 다. 마케팅
- 라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### · 신용정보의 종류

#### 가. 식별정보

-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 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#### 나. 신용거래정보

##### · 개인신용거래정보

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
##### · 기업신용거래정보

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부도정보,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 등

####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
-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#### 라. 신용능력정보

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#### **마. 공공기록정보**

-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료,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#### **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**

##### **가. 제공대상자**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
- 신용정보회사 : NICE신용정보평가 등
- 제휴회사 [제휴업체 게시화면 바로가기]
- 위탁회사 [위탁업체 게시화면 바로가기]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##### **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**

-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· 수집 · 보관 · 제공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##### **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**

- 식별정보
- 신용거래정보
- 금융질서문란정보
- 신용능력정보

#### **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**

##### **가. 보유 및 이용기간**

-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 년 (단, 금융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자본시장법(10 년 이상 보관)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분리 보관)

##### **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**

- 당사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, 전자적 파일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

#### **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**

- 위탁업체 참조 [위탁업체 게시화면 바로가기]

## **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**

### **가. 본인신용정보 제공 · 열람청구권**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및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**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**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**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**
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 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**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**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### **마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**

-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(선택적 정보 : 3 개월, 필수적 정보 : 5 년)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한 경우는 제한됩니다.

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예시 : 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)주문기록 등 거래관련자료(10 년),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자료(10 년),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관련자료(10 년) 등

### **바.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 요구권**

-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 **신용정보관리 · 보호**

- 성명 : 서동일 본부장 (CISO, CPO, 신용정보관리보호인)
- 부서 : 정보보호본부

## **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 연혁**

- 제정 및 시행일 : 1995.7.6 (신용정보활용체제 바로가기)
- 개정일 : 2021.3.16